

[별표6]<개정 1994.9.24, 1998.2.28, 2001.11.8>

원수의 수질검사기준(제23조의2제1항관련)

구 분		측정회수	측정항목	측정시기
광역 및 지방 상 수 도	하천수 복류수	월1회이상	pH,BOD,SS, DO,대장균군	
		분기1회이상	Cd,As,CN,Hg,Pb,Cr6+, 음이온계면활 성제,유기인,PCB,불소,세레늄,암모니 아성질소,질산성질소,카바틸1.1.1-트 리클로로에탄,테트라클로로에틸렌,트 리클로로에틸렌,페놀	3월,6월, 9월,12월
	호소수	월1회이상	pH,COD,SS,DO,대장균군	
		분기1회이상	Cd,As,CN,Hg,Pb,Cr6+,음이온계면활 성제,유기인,PCB,불소,세레늄,암모니 아성질소,질산성질소,카바틸1.1.1-트 리클로로에탄,테트라클로로에틸렌,트 리클로로에틸렌,페놀	3월,6월, 9월,12월
	지하수	반기1회이상	Cd,As,CN,Hg,Pb,Cr6+,음이온계면활 성제,다이아지논,파라티온,말라티온,페 니트로티온,불소,세레늄,암모니아성질 소,질산성질소,카바틸1.1.1-트리클로 로에탄,테트라클로로에틸렌,트리클로 로에틸렌,페놀	
간이 · 전용 상 수 도 및 소 규모 급 수 시설	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	반기1회이상	pH,BOD,SS,DO,대장균군	
		2년 1회이상	Cd,As,CN,Hg,Pb,Cr 6+,음이온계면활 성제,유기인,PCB	
	호소수	반기1회이상	pH,COD,SS,DO,대장균군	
		2년 1회이상	Cd,As,CN,Hg,Pb,Cr6+,음이온계면활 성제,유기인,PCB	
	지하수	2년 1회이상	Cd,As,CN,Pb,Cr6+,Hg,음이온계면활 성제,다이아지논,파라티온,말라티온,페 니트로티온	

비고 : 1. 채수지점

- 가. 하천수, 호소수 및 계곡수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.
- 나. 복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, 착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.
- 다.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를 한다.

2. 검사방법

- 가. 불소, 세레늄, 암모니아성질소, 질산성질소, 카바릴, 1.1.1-트리클로로에탄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트리클로로에틸렌, 페놀 및 지하수항목 :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.
- 나. 기타 전항목 :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.